

대한상의 브리프

법무법인 세종 석근배 변호사



제84호 2018년 11월 26일



최근 법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등 수급사업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하도급법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지난 10월 18일부터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시행되었다. 금번 개정은 시행일 기준으로 올해 들어 세 번째 개정으로, 이처럼 잦은 개정빈도만 보더라도 하도급법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금번 개정 하도급법 및 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2018년 10월 개정 하도급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10월 18일 시행)

기술탈취 금지 강화하고, 서면실태조사 방해 금지 신설

이번에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2018. 4. 17. 법률 제 15612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도 기술자료 탈취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추가되었다(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둘째,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를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여 수급사업자를 오랜 기간 동안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하도급법 제23조 제1항). 셋째, 하도급 위반 사건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서면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2조의2 제4항).

과징금 올리고 조사방해 과태료 기준 신설

이러한 하도급법 개정사항뿐만 아니라 같은 날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에도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 첫째,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이 정비되었고, 둘째,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및 보존 의무가 강화되었으며, 셋째, 법위반행위 억제를 위한 벌점제도가 대폭 보완되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술자료 유출(하도급법 제12조의3), 보복행위(하도급법 제19조) 등 법위반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최고금액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높아졌고,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었다.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및 보존 의무가 강화되어 앞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기존의 7개 사항(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기술자료 제공 요구 목적,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관한 사항,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에 더하여 3개 사항(기술자료 사용 기한, 기술자

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을 추가한 10가지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조 제3항).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 보존해야 하는 기술자료 관련 서류의 보존기한을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여 기술자료 관련 서류가 장기간 보관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6조 제2항).

벌점 강화돼 one strike-out 가능해져

눈에 띄는 중요한 개정 사항으로 법위반행위 억제를 위한 벌점제도가 대폭 강화된 부분을 들 수 있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벌점을 부여하고, 일정한 벌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입찰에 대한 참여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은 이미 도입되어 있었다(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그러나 위반유형이나 조치유형별로 부과되는 벌점의 수준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고, 이에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벌점제도가 대폭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하도급법 제4조), 감액금지(하도급법 제11조), 기술자료 유출 및 유용행위(하도급법 제12조의3)에 대하여 고발조치가 있을 경우 부과되는 벌점이 기존 3.0점에서 5.1점으로 대폭 상향되어 단 한 번의 위반행위만으로도 공공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벌점 5점 초과 시 최대 2년간 제한)될 수 있도록 하였다(one strike-out 제도).

또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하도급법 제4조), 감액금지(하도급법 제11조), 기술자료유출 및 유용행위(하도급법 제12조의3),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행위¹⁾ (하도급법 제19조)에 대하여 과징금 조치를 할 경우 부과되는 벌점이 2.5점에서 2.6점으로

상향되어 이러한 유형을 두 번 위반하면 공공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였다(two strike-out 제도).

개정 하도급법 및 시행령의 시사점

최근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경향 지속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하도급법 및 시행령은 수급사업자를 한층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비단 2018. 10. 18. 개정된 부분뿐만 아니라 아래 표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수급사업자 보호와 관련이 있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탈취 규제 강화 주목해야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여러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 중 특히 하도급법 제1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9. 기술유용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기술유용사건 TF 신설 등 규제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있고,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기술유용과 관련된 법령 개정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입찰참가 제한 안되도록 법 준수 노력해야

마지막으로 금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위반행위 억제를 위한 벌점제도가 대폭 보완되었다는

1) 참고로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2016. 12. 27. 개정 시행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상향하여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하도급법상 **벌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여러 차례 있었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규제 당국이 벌점 **초과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벌점제도의 개정은 법 위반행위가 **실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만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 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 **통상 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여러 위반유형이 함께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이러한 하도급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명확히 인식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2018년 주요 하도급법 개정 사항]

시행 시기	주요 내용
2018. 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공무원 등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자의 벌금액 비율 개정 수급사업자의 요청 시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대체할 수 있는 증서(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2018. 7.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법 제12조의3의 기술자료의 범위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에 맞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확장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및 협의 대상 사유 확대(원재료 가격 변동 →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봄 수급사업자가 공정위, 법원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금지되는 보복조치 원인행위 유형으로 신설 현행 3배 배상제도의 적용대상 행위에 보복조치를 추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 시 하도급대금 등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 중단, 조정절차 후 조서가 작성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조정절차 종료 및 각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분쟁조정절차 이용 활성화 공정위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은 수뢰죄 등 범죄에 대해 공무원 신분과 동일 취급
2018. 10.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도 기술자료 탈취 행위 유형으로 추가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 확대(거래종료 후 3년 → 7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국내·외 경제지표

2018년 11월 26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6	2017 ^(E)	IMF		OECD	
			2018 ^(P)	2019 ^(P)	2018 ^(P)	2019 ^(P)
한국	2.8	3.1	2.8	2.6	2.7	2.8
세계	3.2	3.7	3.9	3.9	3.7	3.7
미국	1.5	2.2	2.9	2.5	2.9	2.7
중국	6.7	6.9	6.6	6.2	6.7	6.4
일본	1.0	1.7	1.1	0.9	1.2	1.2
EU	2.0	2.4	2.0	1.9	2.0	1.9

* E : 잠정치(Estimate) / P :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¹⁾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6	2017	'18.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원/달러	1,161	1,131	1,076	1,093	1,123	1,121	1,121	1,131
원/엔(100엔)	1,068	1,009	981	993	1,008	1,010	1,003	1,003
원/위안	174.4	167.5	169.2	169.1	167.1	163.7	163.4	163.3
원/유로	1,283	1,276	1,272	1,275	1,312	1,296	1,305	1,300
유가(Dubai)	53.8	53.2	74.4	73.6	73.1	72.5	77.2	79.4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6	2017	'18.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산업생산	3.0	2.3	1.7	0.2	1.4	1.6	-4.8	-
소매판매	3.9	1.9	4.5	4.0	5.5	5.9	0.5	-
설비투자	-1.3	14.1	-3.5	-14.7	-10.1	-11.3	-19.3	-
수출	-5.9	15.8	12.8	-0.3	6.1	8.7	-8.2	22.7
수입	-6.9	17.8	12.9	11.0	16.4	9.4	-1.6	27.9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